

2021

개호보험 길잡이

<개요판>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가?

‘개호보험제도’는 40세 이상인 사람이 전원 가입해야 하는(※) 국가 보험제도로써 시정촌이 운영합니다. 가입자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용 일부(10~30%)를 지불하고 개호(개호 예방)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 의료보험 미가입자는 제외

개호보험료 납부방법이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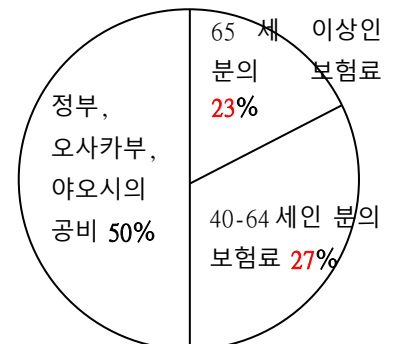
| 65세 이상인 분 |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분 |
|---|---|
| <p>65세 이상인 분은 ‘제 1호 피보험자’라 부릅니다. 65세가 되면 ‘개호보험 피보험자증’과 보험료에 관한 통지서가 각각 송부됩니다. 연금이 연액 18만엔 이상인 분은 ‘특별징수’에 해당하며 <u>연금에서 공제</u>합니다. 연금이 연액 18만엔 미만인 분은 ‘보통징수’에 해당하며 <u>납부서나 계좌이체로 납부</u>합니다.</p> | <p>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분은 ‘제 2호 피보험자’라 부릅니다. 제 2호 피보험자는 의료보험자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의료보험 보험료에 개호보험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p> |

※ 특정 질병

- 암(의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의학적 지견을 기초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 것에 한함.)
- 척추관 협착증
- 폐쇄성 동맥경화증
-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 류머티스 관절염
- 후종인대골화증
- 골다공증성 골절
- 만성폐쇄성 폐질환
- 다계통 위축증
- 양쪽 무릎관절 또는 고관절에 현저한 변형이 있는 변형성 관절증
- 초로기 치매
- 척추소뇌변성증
- 조로증
- 진행성 핵상성 마비, 대뇌피질 기저핵변성증 및 파킨슨병

개호보험 재원

개호보험 재원은 보험료와 공비로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보험료가 개호보험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야오시의 개호보험료에 관하여

65세 이상의 제 1호 피보험자인 분에게 매년 4월 및 7월에 보험료액 결정 통지서를 송부해 드립니다. 개호보험은 상호부조적인 제도입니다. 개호보험제도의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통지서를 기초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 2021년도 개호보험료 | | | |
|----------------------|---|------|------------|
| 소득 단계 | 대상자 | 보험료율 | 연액 보험료 (엔) |
| 제 1 단계 | 생활보호 수급자 노령복지 연금 수급자로 전 세대원이 시민세 비과세자 전 세대원이 시민세 비과세로 합계 소득금액과 과세 연금 수입액의 합계가 80 만엔 이하인 사람 | 0.30 | 23,610 |
| 제 2 단계 | 전 세대원이 시민세 비과세로 합계 소득금액과 과세 연금 수입액 합계가 80 만엔을 초과, 120 만엔 이하인 사람 | 0.45 | 35,410 |
| 제 3 단계 | 전 세대원이 시민세 비과세로 합계 소득금액과 과세 연금 수입액 합계가 120 만엔을 넘는 사람 | 0.70 | 55,080 |
| 제 4 단계 | 본인이 시민세 비과세로 합계 소득금액과 과세 연금 수입액 합계가 80 만엔 이하이며 동일 세대에 시민세 과세자가 있는 사람 | 0.90 | 70,820 |
| 제 5 단계 기준액 | 본인이 시민세 비과세로 합계 소득금액과 과세 연금 수입액 합계가 80 만엔을 넘으며 동일 세대에 시민세 과세자가 있는 사람 | 1.00 | 78,680 |
| 제 6 단계 | 본인이 시민세 과세로 합계 소득금액이 100 만엔 미만인 사람 | 1.20 | 94,420 |
| 제 7 단계 | 본인이 시민세 과세로 합계 소득금액이 100 만엔 이상 120 만엔 미만인 사람 | 1.25 | 98,350 |
| 제 8 단계 | 본인이 시민세 과세로 합계 소득금액이 120 만엔 이상 170 만엔 미만인 사람 | 1.40 | 110,160 |
| 제 9 단계 | 본인이 시민세 과세로 합계 소득금액이 170 만엔 이상 210 만엔 미만인 사람 | 1.50 | 118,020 |
| 제 10 단계 | 본인이 시민세 과세로 합계 소득금액이 210 만엔 이상 320 만엔 미만인 사람 | 1.75 | 137,690 |
| 제 11 단계 | 본인이 시민세 과세로 합계 소득금액이 320 만엔 이상 500 만엔 미만인 사람 | 1.90 | 149,500 |
| 제 12 단계 | 본인이 시민세 과세로 합계 소득금액이 500 만엔 이상 800 만엔 미만인 사람 | 1.95 | 153,430 |
| 제 13 단계 | 본인이 시민세 과세로 합계 소득금액이 800 만엔 이상 1000 만엔 미만인 사람 | 2.05 | 161,300 |
| 제 14 단계 | 본인이 시민세 과세로 합계 소득금액이 1000 만엔 이상인 사람 | 2.25 | 177,030 |

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보험료를 체납하면 다음과 같은 개호 서비스 이용 제한이 적용됩니다.

| | |
|------------------------|--|
| 납기 기한으로부터 1년 경과 | 개호 서비스비 비용이 일단 전액 이용자 부담이 되며 후일 보험 급부가 납입됩니다. |
| 납기 기한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 일시적으로 보험 급부가 정지됩니다. 거듭 체납이 계속되면 정지된 보험 급부액에서 체납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 납기 기한으로부터 2년 경과 | 이용자 부담액이 30% 또는 40%로 인상되며 고액개호 서비스비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개호가 필요하게 되면...

개호(개호 예방)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는 야오시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시청 고령개호과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정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호가 필요한 상태인가 아닌가?’ ‘어느 정도 개호가 필요한가? (요개호 상태 구분)’ 을 결정하여 통지서가 송부됩니다.

① 신청합니다.

우선 야오 시청 본관 2층 고령개호과 창구에서 ‘요개호 인정’을 신청하십시오.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송부처: 야오 시청 고령개호과 야오시 혼마치 1-1-1)

【신청에 필요한 것】

- ‘요개호·요지원 인정신청서’ ※창구,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 ‘연락처 등에 관하여’
- 주치의의 이름, 의료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 것
- 개호보험 피보험자증
- 건강보험피보험자증(40세 이상 65세 미만인 경우)
- 개인번호카드



② 인정을 받습니다. 주치의의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인정 조사

신청 후 시의 직원 등으로부터 방문 일시에 관해 연락이 옵니다. 약속한 날에 인정 조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치의 의견서

본인의 주치의에게 심신과 관련된 상황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 받습니다. (시가 주치의에게 의뢰하니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③ 인정 결과가 통지됩니다.

●심사, 판정

인정 조사와 주치의 의견서를 토대로 개호인정 심사회에서 심사, 판정을 하고 요개호 상태 구분을 결정합니다.

●인정 결과 통지

심사, 판정 후에 시로부터 인정 결과 통지서, 요개호 상태 구분 등이 기재된 피보험자증, 이용자 부담 비율이 기재된 부담비율증이 송부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본인이 신청서를 기입할 수 없다. 본인이 신청하러 갈 수 없다.

가족이나 성년후견인, 고령자 안심 센터(야오시 지역포괄 지원센터), 또는 사업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성령(省令)으로 정해진 거택개호지원사업자나 개호보험시설 등
3 쪽에 있는 **【신청에 필요한 것】**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인감도장이나 위임장이 필요 없습니다.

○인정 조사를 받는 것이 불안하다.

인정 조사나 케어 플랜 작성 시에 외국어 통역이나 점역, 수화통역이 필요한 분에게는 ‘커뮤니케이션 서포터’ 라고 하는 점역자 등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점역 등에 드는 비용은 전액 야오시가 부담하니 고령개호과(072-924-9360)로 상담하십시오.

○보험료가 비싸서 납부할 수 없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유예 및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고령개호과로 상담하십시오.

- ① 재해로 인해 주택 등 재산에 큰 손해를 입었다
- ② 생계 중심자가 사망, 장애, 장기입원으로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 ③ 생계 중심자가 실업(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실업은 제외) 등으로 인해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 ④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 (생활보호법에 규정된 요보호자와 동등한 상태에 있는 분)

○이용자 부담액이 얼마나 들지 걱정이다.

부담 비율이 10%인 분(※)의 비용 기준 (※) 부담비율증에 ‘10%’ 라고 기재되어 있는 분

○데이 서비스 (8시간 이상 9시간 미만)
요개호 1 이라면...
1 회 이용자 부담액은 695 엔 정도.
주 2 회 이용하면 1 개월에 5,560 엔 정도.
요개호 5 라면...
1 회 이용자 부담액이 1,214 엔.
주 2 회 이용하면 1 개월에 9,712 엔 정도.

○방문개호(신체개호)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요개호 1~5 인 분
1 회 이용자 부담액은 423 엔 정도.
주 2 회 이용하면 1 개월에 3,384 엔 정도.
※이른 아침, 심야 시간대에 이용하면 요금이 가산됩니다.

이용자 부담액은 서비스의 종류, 횟수, 요개호 상태 구분 등에 따라 다르므로 케어 플랜을 작성할 때 개호지원 전문원에게 확인하시거나 고령자 안심 센터로 상담해 주십시오.

인정 결과 통지서가 송부되면...

① 요개호 상태 구분과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요개호 상태 구분은 개호도가 중증인 순서로 요개호 5, 4, 3, 2, 1 > 요지원 2, 1 > 비해당이 있습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케어 플랜을 작성합니다. ※ 재택 서비스의 경우

○요개호 1~5로 인정받은 분

지정 거택개호지원사업자에게 케어 플랜 작성을 의뢰하기 위해 사업자를 골라 연락합니다.



거택 개호지원 사업자의 케어 매니저가 방문하여 본인이나 가족과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상담합니다.



서비스의 종류나 횟수가 기재된 '케어 플랜'이 완성됩니다.

○요지원 1~2로 인정받은 분

고령자 안심 센터(야오시 지역포괄 지원 센터) 일람(※) 중에서 거주하시는 중학교 학구를 담당하는 고령자 안심 센터에 연락합니다.
※ 인정 결과 통지서에 동봉되어 있습니다.



고령자 안심 센터 직원이 방문하여 본인이나 가족과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상담합니다.



서비스의 종류나 횟수가 기재된 '케어 플랜'이 완성됩니다.

○비해당으로 인정된 분은 야오시가 실시하는 '개호 예방 교실' 이나 '개호 예방·일상 생활 지원 종합사업'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령자 안심 센터 (072-924-93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케어 플랜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서비스 사업자에게 '피보험자증' 과 '부담비율증' 을 제시해 주십시오.

또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곤란한 점이 있으면 서비스 사업자에게 연락하십시오.



④ 서비스에 든 비용을 납부합니다.

서비스 사업자에 지불하는 것은 서비스 비용의 일부(※)입니다.

매달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청구가 오므로 이용자 부담액을 납부하십시오.

또한, 케어 플랜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거택개호지원사업자로부터의 청구는 없습니다.

※ 부담비율은 '부담비율증' 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있는가?

재택 서비스

○통소하여 이용한다

데이 서비스 센터 및 의료기관 등에서 식사, 입욕 등 일상생활상의 지원이나 생활 행위 향상을 위한 지원, 재활을 당일치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을 받아 이용한다

홈 헬퍼가 집을 방문하여 목욕시키거나, 배설, 식사 등의 신체개호나 요리, 세탁 등의 생활을 보조하고 간호사 등이 집을 방문하여 영양상 돌보기 및 진료 보조를 하거나 합니다.

○단기간 입소한다

복지 시설 등에 단기간 입소하여 일상생활상의 지원이나 기능훈련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에서의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일상생활에서의 자립을 돕기 위해 복지 용구를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증인 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인지증인 고령자가 데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등에 다니거나 그룹 홈에 입주하거나 하여 일상생활상의 돌보기 및 기능훈련 같은 개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밖에도 다양한 서비스가 있으므로 고령개호과, 고령자 안심 센터(야오시 지역포괄 지원센터), 케어 매니저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서비스

○시설에 입소한다

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분은 '요개호' 인정을 받은 분만(※)입니다.

또한 입소 신청은 시설에 직접 신청합니다.

- 개호노인복지시설(특별 양호 노인 홈) (※) 개호노인복지 시설은 원칙적으로 요개호 3 이상인 분이 대상입니다. 항상 개호가 필요하고 자택에서의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 입소하여 일상생활상의 지원이나 개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호노인보건시설
상태가 안정된 사람이 재택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을 중심으로 한 케어를 합니다.
- 개호요양형 의료시설
급성기 치료를 끝내고 장기 요양을 해야 하는 사람을 위한 의료시설입니다.
- 개호의료원
장기 요양을 해야 하는 사람을 위한 의료시설로 의료와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개호를 일체적으로 제공합니다.

문의처

| 내용 | 창구, 연락처 |
|--|--|
| 개호보험제도에 관한 것 | 야오시 고령개호과 (전화: 072-924-9360 FAX: 072-924-1005) |
| 고령자 종합상담창구 (고령자 안심 센터(기간형 지역포괄 지원센터)) | 기간형 고령자 안심 센터 (야오시 고령개호과 지역지원실 내) (전화: 072-924-9306 FAX : 072-924-3981) |
| 길거리 데이 하우스, 배회 고령자 지원 등 | 야오시 고령개호과 지역지원실 (전화: 072-924-3837 FAX: 072-924-3981) |
| 긴급통보시스템, 개호용품 지급, 고령 클럽, 고령자 교류 농원 등 | 야오시 고령개호과 (전화: 072-924-3854 FAX: 072-924-1005) |
| 특정 검진, 암 검진 등 | 야오시 보건센터(야오시 건강추진과) (전화: 072-993-8600 FAX: 072-996-1598) |
| 장애 복지 서비스에 관한 것 | 야오시 장애복지과 (전화: 072-924-3838 FAX: 072-922-4900) |
|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 관한 것 | 야오시 건강보험과 고령자 의료계 (전화: 072-924-3997 FAX: 072-923-2935) |
|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것 | 야오시 건강보험과 (전화: 072-924-3865 FAX: 072-923-2935) |
| 휠체어 대여 | 야오시 사회복지협의회 (전화: 072-991-1161 FAX: 072-924-0974) |
| 복지, 가사 보조 서비스(유상) 제공 | 실버 인재센터 (전화: 072-924-2001 FAX: 072-992-8282) |
| 이송 서비스(유상) 제공 | 서포트 야오 자원봉사센터 (전화: 072-925-1045 FAX: 072-925-1161) |
| 성년 후견 제도에 관한 상담 | 야오시 사회복지협의회 권리 옹호 센터 (전화: 072-991-1161 FAX: 072-924-0974) |
| 소비생활, 다중채무(빚)에 관한 것 | 야오시 산업정책과 야오시 소비생활센터 (전화: 072-924-8531 FAX: 072-924-0180) |
| 방법, 전화금융사기에 관한 것 | 야오경찰서 (전화: 072-992-1234 FAX: 072-924-5270) |